

농어업경영체 확인서 제출 안내
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발급처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또는 무인발급기)

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류 권장

경영주명과 고용신청서 대표자가 동일할 것